



사이트 더보기

통합검색

해외투자

무역자료실

열린마당

빅데이터

뉴스

상품·산업

국가·지역정보

보고서

영상뉴스

뉴스

- 전체
- 경제·무역
- 통상·규제
- 투자진출
- 현장·인터뷰
- 기획성 속보
- 외부전문가 기고
- 직원기고
- 일자리
- 코로나19

통상·규제

중국, 인터넷산업 규제 강화 동향

2021-09-23 중국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법제도 정비, 반독점, 데이터 안전 강화 등 다방면으로 추진 -
- 산업 규범화 발전 및 혁신역량 강화가 최종 목적 -

중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산업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십여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 동안 인터넷 산업 및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그 발전을 장려했다. 그러나 2020년 인터넷 영역 반독점 조사 및 법제도 정비에 착수하며 시장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 발전을 규범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당국은 1) 법제도 정비, 2) 반독점 조사, 3) 데이터 안전 강화 등 다방면으로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1) 전문 법제도 구축

중국에서 인터넷 산업은 법과 규제의 '회색지대'에서 급격하게 몸집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국이 포용적이며 규제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중국 현행법상 인터넷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으나 산업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제정으로 지적돼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당국은 전문적·구체적 법적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2021년 들어 '반독점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2021년 들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초점 맞춘 전문 법규를 쏟아내고 있다.

올 1월부터 중국 금융, 시장관리 등 주무 부처들은 핀테크,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영역의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징계 기준을 제정하고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엄금했다. 2월엔 플랫폼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해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남용 등 행위와 규제를 구체화한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 SNS, 라이브커머스 등 최근의 최 온라인 거래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규범화 작업에 나섰다.

2021년 중국 인터넷 산업 발전 규범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상황

발표시기	규정	주요 내용
1월	'비은행결제기관조례' (의견수렴안)	- 온라인·모바일 결제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기준·반독점 조 ·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50%, 2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 ≥ 2/3,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 ≥ 3/4
2월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	- '반독점법'에 근거해 플랫폼의 독과점·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여 · △가격담합, △독점거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강제매매, △기술을 활용한 경쟁저해 등 - '시장 지배적 지위'와 '남용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확정
3월	온라인 거래 감독관리방법	- '전자상거래법' 시행 후 전자상거래 관리감독을 위한 첫 세부 시행법 · SNS, 라이브 방송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온라인 거래 사 · 플랫폼 내 경영자 정보 등록 및 공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허위 거 · 조취수 및 사용자 후기 조작 등 부당한 경쟁행위 금지 등
4월	인민법원 지재권 사법보호 계획(2021~2025)	- 향후 5년간 인터넷 영역의 반독점 규제 강화, 플랫폼 경제 관련 반독
6월	공정경쟁심사제도 실시 세칙	- 공정경쟁 심사표준, 감독과 책임 등 관련 규정 명시
8월	반독점 규제 강화 및 공정경쟁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	- 플랫폼 경제, 기술혁신, 정보안전, 민생 보장 등을 중점 반독점법 집행

인기정보

- 1 2021년 베트남 제약 산업 ...
- 2 지금 베트남은 코로나19와...
- 3 북미 최대 배터리쇼 'The B...
- 4 테슬라 1위! 중국 신에너지차...
- 5 케냐 유류세 인상, 코로나 ...
- 6 [기고] 미국 특허상표청의 ...
- 7 [기고] 미얀마 진출기업이 ...
- 8 터키 스타트업 생태계, 지...
- 9 GCC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 10 美 하원, '주 32시간 근무' ...

Top ▲

자료: 중국 정부 발표, 현지 언론 등 종합

해외투자

무역자료실

열린마당

빅데이터

2) 반독점·반부정당경쟁

중국 반독점 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대형 플랫폼의 독점·부정당경쟁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조사에 시동을 걸 리바바 등 3개사에 반독점 위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대형 인터넷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 2008년 반독점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인터넷기업에 적용된 사례이다. 정부가 대형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 련 정책방향 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 발표 다음날인 2021년 2월 8일에는 대표 B2C 플랫폼인 웨이핀후이(唯品會)에 부과 결정을 내렸다. 시감총국은 웨이핀후이가 B2C 플랫폼으로서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단 등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판매채널을 제한해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4월 반독점 당국인 시감총국은 알리바바의 ‘플랫폼 내 기업에 독점 판매 강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반독점 벌금을 부과했다. 2019년 알리바바 매출액 4557억 위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015년 쿨컴에 부과 위안의 3배 수준으로 중국 반독점 사상 최대 규모다.

규제대상은 알리바바 등 빅테크 기업, 플랫폼 경제에 국한되지 않았다. 5월 베이징시 시장관리 주관부처가 온라인 각 250만 위안 벌금을 부과했다. 7월 텐센트뮤직에 ‘음악 독점권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규제가 인터넷산업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 인터넷기업에 대한 반독점·반부정당경쟁 처벌 사례

시기	대상 기업	처벌 내용
2020.12.	알리바바, 위예원 (阅文), 핑차오(丰巢)	- 인수, 합병 과정에서 경영자 집중 신고 의무 미이행 - ‘반독점법’에 의거 각각 벌금 50만 위안 부과
2020.12.	징둥, 티몰, VIP(唯品會)	- 3개사에 부당한 가격 조작 위반으로 각각 50만 위안 벌금 부과 · 상스이(双十一) 온라인 쇼핑 행사 전 일부 제품 가격 인상 후 할인, 허위
2021.2.	VIP(唯品會)	- ‘반부정당경쟁법’ 위반 혐의로 300만 위안 벌금 부과
2021.3.	인타이(銀泰), 텐센트, 바이두 등 12개 사	- 불법 M&A로 각각 벌금 50만 위안 부과
	텐센트 외	- 불법 M&A로 각각 벌금 50만 위안 부과
	핀뉘뉘·메이탄 등 공동구매 플랫폼 5곳	-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 판매해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고 타인의 합 - 메이탄·핀뉘뉘·디디추싱 산하 플랫폼과 스후이탄(十荟團)에 각각 150만 · 享會)에 50만 위안 벌금 부과
2021.4.	알리바바	- ‘플랫폼 내 기업에 독점 판매 강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1829 부과 -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2019년도 중국 내 매출액의 4%))
2021.5.	쥐예방(作业帮), 위안 푸다오(猿辅导)	- 강사 경력사항 및 가격 허위 기재, 허위광고 등 불법행위에 각각 250만 위
2021.7.	후야(虎牙), 더우위 (斗魚)	- 두 회사의 지분을 텐센트가 대거 보유하고 있으므로 합병 금지
	텐센트	- △ 30일 내 음악 독점판권 포기 △ 고액 선금금 지급하는 방식 중단 △ 올 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등 부정당경쟁행위 중단 등 지시 - 향후 3년간 매년 시장상황을 당국에 보고할 것을 요구
	알리바바, 디디추싱, 텐센트, 쉰닝, 메이탄	- 22건 반독점 조사 결과, 관련 기업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각각 50만 위 · 이 중 8건 디디추싱, 6건 알리바바, 5건 텐센트, 2건 쉰닝, 1건은 메이탄

자료: 중국 정부 발표, 현지 언론 등 종합

3) 데이터 안전 강화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본격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데이터 안전 강화 법안을 집중적으로 제정·통과 월 1일부 시행해온 ‘사이버보안법(網絡安全法)’에서 범위가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안전’ 으로 중국 데이터 정보보호의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2021년 중국 데이터안전 강화 관련 법제도 정비 상황

발표 시기	법규	주요 내용
2021.6.	데이터안전법	- 데이터 분류 관리, 데이터 안전 평가 및 심사 등 관리제도

To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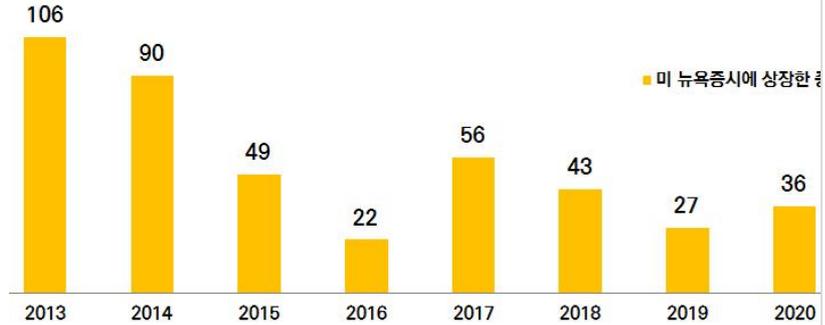
2021.7.	사이버안전심사방법 (의견수렴안)	- 사용자 ≥ 100만 명 사업자 해외상장 전 당국으로부터 허	해외투자
2021.8.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수집, 저장, 사용, 가공, 전송, 공개, 삭제 등 괄적으로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기본법	무역자료실
	핵심 정보 인프라 안전보호조례	- 국가사이버보안당국, 공안당국 및 관련 부처, 핵심 정보 인 공동 구축	열린마당

자료: 중국 정부 발표, 현지 언론 등 종합

빅데이터

인터넷기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데이터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7월 중국 정부가 미 뉴욕증권거래
업체 디디추싱에 대해 안보 조사를 진행한 것도 디디추싱이 사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이기 때문
외상장은 그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수백만 명 사용자를 보유한 인터넷기업들의 해외상장
해외 유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7월 중국 정부는 ‘사용자 ≥ 100만 명 사업자 해외상장 전 당국
록 의무화’하는 ‘사이버안전심사방법’ 의견수렴안을 발표했다.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미중 갈등이 날로 심화되자
막기 위해 대대적인 법제도 정비 및 기업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해외 언론, 전문기관(日 Daiwa Asset Manager
있다.

미 뉴욕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 수



자료: Wind

전망 및 시사점

중국 정부의 인터넷 영역에 대한 규제 강화는 전면적·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환경 변화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반독점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는 2021년 중국의 8대 정책과제
당국인 시감총국을 비롯한 중국 각 부처가 올해 사업목표에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및 반독점 관리 강화’를 포함
가격담합 등 비판이 있는 업계의 적발이 반독점·반부정당경쟁 조사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관련 법·제도의 운용 방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중국의 데이터 안전 강화 관련 법제도 정비가 가속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2017년 6월 1일부 시행해온 ‘사이버보안법(網絡安全法)’, 2021년 6
1일부 시행하는 ‘데이터안전법(数据安全法)’과 함께, 중국 사이버 관리·데이터 보호의 트로이카 시대를 열었다. 중
법 전문가인 전지홍(陳際紅) 중륜(中倫)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아직까지 중국
적 지위를 갖고 영향력을 미친 사례가 없어 한국 기업이 단기간 내에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
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인터넷 규제 강화의 목적은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 및 규범화 발전”이라고 강조한다. 일부
경쟁 등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강한 처벌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인터넷 영역의 공정한 시장 질서 유
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시장 질서 정비는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중국 정부의 신산업·기업 육성전략은
다. 중국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육성책, 지원책을 계속하여 제정, 시행할 것으로 내

자료: 텐펑(天風)증권연구소, 日 Daiwa Asset Management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Top ▲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인터넷산업 규제 강화 동향)의 경우 ‘공
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
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외투자

무역자료실

열린마당

빅데이터

추천(0) | 스크랩

이전글	베트남, 수출세 부과 절차 및 유의사항
다음글	中 베이징, 11월 1일부 新 전기자전거 국가표준 전면 적용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번호	제목	국가
1	베트남, 수출세 부과 절차 및 유의사항	베트남
2	전략국제연구센터, 美 반도체 공급망 분석 및 한미 협력방안 논의	미국
3	유럽 그린딜을 향한 여정, FIT FOR 55를 살펴보자②	벨기에
4	[기고] 中, 저작권법 전면 개정에 따른 저작권 강력 보호시대 도래	중국
5	이탈리아, 식품 원산지 필수 표기 품목 동향	이탈리아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작권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뷰어 다운로드](#)
 [RSS이용](#)
 [사이트맵](#)

(06792)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사업자등록번호 120-82-00275 TEL : 1600-7119

COPYRIGHT(C)2012 KOTRA. ALL RIGHTS RESERVED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Top▲